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24
----------	------

202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3. 상정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시정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57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위탁)

나. 위탁기간 : 2022. 10. 11. ~ 2024. 6. 30.

다.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공유동(15동) 6층

라. 운영인력 : 7명

마. 소요예산 : 금578백만원('22년 예산)

- 인건비 358백만원, 운영비 110백만원, 사업비 110백만원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2. 5. 12.)

사.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

- 추진 필요성

- 최근 심화되는 젠더갈등 및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자치구 활동가를 비롯한 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성평등 교육 및 젠더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함
- 성평등·성인지 교육 및 사업의 성인지성 제고와 관련한 전문가

및 자치구 단위와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운영 및 활용하여
시정의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과 연계하고 양성평등 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사. 위탁사무

-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사업
- 성평등 활동 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지원
-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활동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

제5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재위탁¹⁾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의3제1항²⁾³⁾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⁴⁾에 따라 2017년 10월 서울혁신파크 내에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사무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과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재위탁에만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재위탁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민간위탁조례」가 개정(시행 2021.12.30.)되었음.
 -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실시 및 역량강화 사업
- 성평등 활동 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지원
-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활동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민간위탁 추진 경위〉

- '16. 9월 : (가칭)여성NGO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
- '15. 12월 :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7.10월 :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 ◁ 1회차 공개모집 '17.10.11.~'19.10.10.[2년, (사)여성사회교육원]
- '18. 3월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개소식
- '19. 4월 : 재위탁 시의회 보고
- '19.10월 : 재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
 - ◁ 2회차 공개모집 '19.10.11.~'22.10.10.[3년, (사)여성사회교육원]
- ※ '21.4월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 ((사)젠더교육플랫폼효재(대표: 조영숙)
- '22. 4월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323, '22. 4. 18.)

- 한편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같은 시기 평가를 받은 전체 19개 사무의 평균 77.82점에 비해 센터의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80.18점을 기록하였으나, 사업비 비중이 낮아 사업 성과증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개선요청사항으로 제안되었음⁵⁾.

<2022년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 사업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교육’, ‘공동체별 정기강좌’를 업무협약(MOU)체결 등을 통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성과가 우수함 ▶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자치구 활동 역량강화 및 자치구 센터 기반 구축 마련과 전국(여가부) 양성평등센터 사업모델로 확산 ▶ 성평등 활동 의제와 이슈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함에 있어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조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사업기획 및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한 실적이 우수함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21.3%로 낮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투입에 따른 사업의 성과증진을 위해 노력 필요 ▶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해 교육 대상별 기초/심화 맞춤 교육 커리큘럼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도 ‘알기 쉬운 자료’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 보급될 필요가 있음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 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⁶⁾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

5) 서울특별시(2022.4),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2022.5.12.),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서울정보소통광장.

6)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2조7)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

- 또한 같은조례 제57조8)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조례」제4조9) 및 제6조10)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활동가 등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5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건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젠더갈등의 해소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전체 예산 대비 낮은 사업비 문제의 경우 상담 및 교육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센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무 특성에 따른 평가 척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시장 공약인 “서울혁신파크(舊국립보건원부지),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추진 일정에 맞춰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혁신파크센터 공간에서 2023년 말까지 퇴거 및 이전을 협의 중에 있는 바¹¹⁾, 향후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공간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한편 2022년 1월 31일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184개(여성가족정책실 65개, 복지정책실 88개, 시민건강국 31개)로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424개)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임.

11) 서울특별시 사회협력과(2022.2.24.), 서울혁신파크 분임재산관리관 TF 구성·운영 계획, 사회협력과-1851.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24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시정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57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위탁)
- 나. 위탁기간 : 2022. 10. 11. ~ 2024. 6. 30.
- 다.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공유동(15동) 6층
- 라. 운영인력 : 7명
- 마. 소요예산 : 금578백만원('22년 예산)
- 인건비 358백만원, 운영비 110백만원, 사업비 110백만원
- 바. 수탁기간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2. 5. 12.)

사.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

○ 추진 필요성

- 최근 심화되는 젠더갈등 및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자치구 활동가를 비롯한 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성평등 교육 및 젠더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함
- 성평등·성인지 교육 및 사업의 성인지성 제고와 관련한 전문가 및 자치구 단위와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운영 및 활용하여 시정의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과 연계하고 양성평등 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아. 위탁사무

-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실시 및 역량강화 사업
- 성평등 활동 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지원
-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활동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7조

제5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유보람(☎ 2133-5057)